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7 선고 2022가합101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

피 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진홍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곽소영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1. 7.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1.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C 주식회사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1. 7. 13. 접수 제712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주식회사 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1. 8. 4. 접수 제775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804분의 325.435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1. 7.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1. 7. 13. 접수 제712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804분의 349.635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1.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1. 8. 4. 접수 제775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수 법인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각 발급하였고, C은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각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기한 (연장된 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고
2016. 5. 19.	중소기업은행	2017. 5. 19. (2022. 5. 13.)	765,000,000원 (900,000,000원)	이하 '보증1'이라 함
2016. 5. 19.	중소기업은행	2017. 5. 19. (2022. 5. 13.)	450,000,000원 (500,000,000원)	이하 '보증2'이라 함
2017. 6. 12.	중소기업은행	2018. 6. 12. (2022. 5. 13.)	425,000,000원 (500,000,000원)	이하 '보증3'이라 함

나. 이후 보증2의 보증금액은 42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C은 2021. 7. 14.부터 위 각 대출에 따른 이자를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21. 8. 13.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29. C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641,958,192원(보증1 관련 778,566,782원 + 보증2 관련 431,695,705원 + 보증3 관련 431,695,7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가 2021. 12. 29. 1,142,997원, 2022. 1. 3. 35,748원을 각 회수하고, 확정지연손해금 39원, 법적절차비용 909,100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2. 9. 기준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합계 1,641,688,586원(= 대위변제금 1,641,958,192원 - 회수금 1,178,745원 + 지연손해금 39원 + 법적절차비용 909,100원)이다.

마. 한편, C은 거래처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부동산	근저당권자	계약일	등기일	접수번호	법원등기소	채권최고액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피고 A	2021. 7. 13.	2021. 7. 13.	71204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500,000,000원
	피고 B	2021. 8. 4.	2021. 8. 4.	77573	상동	500,000,000원

단,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갑구 7번(1,804분의 325.4356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는 갑구 7번 및 12번(합계 1,804분의 349.6356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시점은 2021. 7. 14.로 피고 A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¹⁾ 이자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21. 8. 4.보다 약 3주 전인 사실, 2021.

8. 13. C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1. 12. 29.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갑 제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C의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3,372,204,475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청주시 상당구 D, 제1층 E호, 김포시 F 임야 558㎡ 중 558분의 59지분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피고들에 대한 채무 합계 5,704,354,542원이 존재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갹생목적 담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A은, C과 2012. 4.경 처음 거래를 시작한 이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향후 피고 A이 C에 제공하는 원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이고, 이는 C의 사업계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B는, C과 약 10년 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C이 2021. 7. 30.까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 279,317,060원과 2021. 7. 31. 피고 B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원자재 대금 68,035,000원을 더한 347,352,060원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 B의 손해, 향후 계속해서 발생될 물품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유통 없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292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과 피고 A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C은 피고 A에 대하여 774,435,607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피고 A이 C에게 추가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신규 물품의 공급 없이 C의 피고 A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피고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목적은 주로 C의 피고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피고 B가 C에 대하여 신규로 원자재 등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신규 물품의 공급 없이 C의 피고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C과 각각 10년 가까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근저당권설정 등 그 물품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지 아니하다가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무렵 C과 기존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피고들과 C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켜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건, 판사 국양근, 판사 임현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김포시
공장용지 1399㎡
2. 경기도 김포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위치상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 공장
730.8㎡
3. 경기도 김포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위치상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사무실
1층 186.75㎡
2층 186.75㎡

4. 경기도 김포시

공장용지 1665㎡

5. 경기도 김포시

공장용지 1294㎡

6. 경기도 김포시

공장용지 1028㎡.

7. 경기도 김포시

임야 1708㎡

(공유자 주식회사의 지분 1804분의 427,7956 전부). 끝.

1) 피고 A은 C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이 2021. 5. 20.이라고 주장하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이 2021. 7. 13.로 기재되어 있는 점,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에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